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3790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19구합6484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359,710원 및 지방교육세 1,850,680원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각 세액결정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2. 28. B공사와 C공사(이하 두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D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redacted]시 E리 소재 F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 내 임시지번 G 내지 H 공장용지(면적 합계 31,803㎡)를 요트 제조공장 신축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D공사에게 계약금 1,610,869,4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610,869,400원은 2011. 8. 20., 2차 중도금 3,221,738,800원은 2012. 4. 20., 3차 중도금 3,221,738,800원은 2012. 12. 20., 4차 중도금 3,221,738,800원은 2013. 8. 20., 잔금 3,221,738,800원은 2014. 3. 20. 각 지급하되, 단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감된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정산금액에서 차감하기로 D공사와 약정하였고, 약정일자에 각 중도금을 지급한 후 D공사와의 사이에 2014. 3. 19. 잔금지급일을 2014.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4. 12. 1. 잔금지급일을 2014. 12. 31.로, 정산차감약정에 따라 잔금을 2,310,139,8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31. D공사에게 잔금 2,310,139,800원을 지급하였으나, D공사가 시행한 이 사건 단지 조성 준공이 지연되어 2017. 1. 16.에야 화성시 I 공장용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7162.9㎡, J 공장용지 8485.1㎡, K 공장용지 8599.3㎡, L 공장용지 754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 가.항 기재 토지와 동일한 토지인데 단지조성 과정에서 면적이 13.5㎡ 축소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①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1]에 따라 면제받았고, ② 2015년 내지 2017년분 재산세는 위 조항[2]에 따라 50% 경감받았고, ③ 2018년분 재산세는 특례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35% 경감받았으며, ④ 등록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세는 구 세법 제260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받았고, ⑤ 취득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따라 면제받았고, ⑥ 재산세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감받아(이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연동하여 감면 및 부과가 이루어지므로[3], 위 각 세목 뒤에 '등'이라고만 표시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면받았다.

라.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12. 31.부터 3년이 경과한 20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장 신축에 착수하여 2018. 8. 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990㎡ 2층 144㎡인 두 동의 건물(M동과 N동,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8.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산업

1)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계약금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것인데, 그 내용은 위 특례법 조항과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특례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특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특례법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비율이 35%로 줄었으나, 개정 법률 부칙 제25조에 의하여 2017. 12. 31.까지 종전 조항이 적용된다.

3) 지방세법 제152조, 구 세법 제260조의4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신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특례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50% 경감), 제8항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8. 12. 31.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호(추가 25% 경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1)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32,856,000원을 경감받았다.

마. 원고는 2018. 8. 2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0. 위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과 부지를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9. 1. 11. 등록세 및 취득세 등 합계 861,662,500원(위 다.항에서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 추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을, 2019. 4. 4. 재산세 등 합계 72,928,160원(위 다.항에서 경감받은 세액)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하였고, 2019. 3. 22.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특례법 제78조 제5항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39,210,390원(위 라.항에서 경감받은 세액에 가산세 추가)의 세액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1 및 3처분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이 사건 1 및 3처분 전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4]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요트 건조를 하려는 목적으로 선박 건조 및 진수가 가능하고 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특정하여(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수회 현장 답사를 한 후 위치를 정하였고, 당시 지정한 임시지번 G 내지 H 공장용지가 부지조성 이후 지번이 부여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차 중도금 지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2. 2. 20.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4) 감면에 관하여는 위 조항 본문이 특례법 제78조 제4항과, 추징에 관하여는 위 조항 단서가 특례법 제78조 제5항과 각 내용이 동일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담당자는 D공사를 방문하여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어 계약을 승계할 매수인을 구하고 싶으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면적을 1/4 정도로 축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D공사 담당자는 원고 매수 부분이 요지이고, 추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으니 축소는 재고하고 전부 승계가 어려우면 일부 승계라도 할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① 매매대금 체납의 경우 지연이자 및 기한이익상실 약정(계약서 제2조, 제8조), ② 이 사건 단지 조성 준공 전에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D공사가 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용승낙을 하여야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약정(계약서 제3조, 제10조 제2항), ③ 단지조성이 D공사의 책임 없이 지연될 경우 원고가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서 제5조), ④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D공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계약서 제9조), ⑤ 원고가 대상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 입지여건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수인하는 약정(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의 이후 원고는 지연 없이 4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 전인 2014. 10. 22. 원고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단지 내 다른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D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공장을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공장을 가동 중인 점, 원고 매수 토지에는 조선대 설치가 불가능하고, 준설을 하지 않으면 간조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여 요트 건조가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D공사에게 변경공사나 계약해제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약정기일인 2014. 12. 31.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마) 원고는 잔금 지급 이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사이에 D공사에게 사용승낙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7. 2. 15. 화성시에 이 사건 각 토지상에 2017년 상반기 중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신축 후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이하 '이 사건 조회'라고 한다) 2017. 2. 17. [redacted]시로부터 공장 준공 후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내지 3, 갑19호증, 갑20호증, 갑3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인 2014. 12. 31.부터{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에 있어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제6조 제20호[5]),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6],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7])}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요트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임대를 검토하지 않다가 2017. 2.경에야 비로소 임대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받고도 1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임대 목적의 공장 신축에 착수하였다.

5)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연부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6) 지방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3조는 2010. 12. 31.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기간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신 후 바로 착공하였더라면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인 2017. 12. 31.까지 충분히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예상과 다른 부지 조성으로 요트 건조가 불가능하여 임대로 전환을 계획하여 공장 신축이 늦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 및 특약사항 제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계약금 연부취득(이 사건 1처분 중 등록세 등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이 지급된 2010. 12.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세법 제124조, 제130조는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되,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는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한편 등록세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고 한다)인 위 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등록세는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등록세가 폐지된 이후이고,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세법에 연부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제111조 제1항 단서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금이 지급된 2010. 12.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은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세법이 등록세에 관하여 취득세와 별도로 취득의 정의규정 내지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상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 사건 3처분 중 2015년 및 2016년 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8],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참조), 2의 가.(2)항 기재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통

8)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상적 매매계약과 다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성을 보태어 보면, 잔금지급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D공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공사가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이 사건 단지 전체의 조성이 끝나야 공부상 소유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과 매매대금 완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매매대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3) 매매대금 완납 후에는 이 사건 단지 전체의 조성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부지조성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9] 원고가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D공사는 승낙할 의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사용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4)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D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D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산업단지 내 용도가 지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세금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5) 잔금 납부기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D공사 명의로 부과된 것이라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해져 있다(위 계약서 제10조 제1항).

9)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6) 원고는 경감되지 않은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 등은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고,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3. 이 사건 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세액결정통지의 처분성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경감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사건 2처분과 같은 세액을 2019. 2. 28.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한 하였고,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위 세액을 시인하는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기본법 제51조 제3항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서[10]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위 통지가 위법하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등"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나. 신뢰보호원칙

원고가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

10)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인 상태에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O에게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2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 전의 이 사건 조회 내용에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경감되었던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포함되어 있고, 추징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 사건 회신을 믿고 임대하였는바, 위 회신은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2처분은 피고가 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회에는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경감되었던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신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전무하므로, 이 사건 회신을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별지1]

과세대상	처분일자	세목	세액
계약금	2019. 1. 11.	취득세	41,995,340원(가산세 9,777,960원)
		등록세	45,668,130원(가산세 13,450,750원)
		지방교육세	7,844,920원(가산세 1,401,450원)
1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83,955,270원(가산세 19,520,500원)
		지방교육세	7,106,820원(가산세 663,360원)
2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3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4차 중도금	2019. 1. 11.	취득세	167,910,580원(가산세 39,041,030원
		지방교육세	14,213,660원(가산세 1,326,710원)
잔금	2019. 1. 11.	취득세	118,673,570원(가산세 27,592,880원)
		지방교육세	10,045,730원(가산세 937,670원)
합계			861,662,500원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12

[별지1]

과세대상	처분일자	세목	세액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19. 4. 4.	2015년분 재산세	12,229,470원
		2015년분 지방교육세	2,445,890원
		2016년분 재산세	14,350,230원
		2016년분 지방교육세	2,870,050원
		2017년분 재산세	15,413,220원
		2017년분 지방교육세	3,082,640원
		2018년분 재산세	18,778,610원
		2018년분 지방교육세	3,758,050원
합계			72,928,160원